

공공시설등 설치비용 납부 협약서

〈 중구 - (주)서울역북부역세권개발 〉

중구 및 (주)서울역북부역세권개발(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52조의2 제2항에 의거 “서울역북부 지구단위 계획”에 결정된 “공공시설등 설치비용 납부”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19조의3 제3항 제2호에 의거 체결한 “서울역북부 지구단위계획 관련 공공시설등 설치비용 납부 협약서” 제6조 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의 납부방식 및 금액에 대한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서울역북부 지구단위계획 관련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 납부 협약서” 제6조 제1항에서 정한 ‘공공시설등 설치비용’(이하 “설치비용”이라 한다)의 납부기간 및 비용에 대하여 동협약서 제7조 제2항에 의거 확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의 성실의 원칙) “중구 및 사업시행자”(이하 “협약당사자”라 한다)는 본 협약을 체결하고 이행함에 상호 의사를 존중하며, 신의 성실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제반법령 및 협약내용 준수) 협약당사자는 본 협약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제반 법령과 본 협약의 내용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필요시에는 협약당사자 간 협의하여 처리한다.

제4조(협약 기간) 본 협약의 협약기간은 제5조에 따른 납부시기에 납입하여야 할 설치 비용을 “사업시행자”가 “중구”(이하 “귀속주체”라 한다)에 납부 완료할 때까지로 한다.

제5조(납부방법 및 기간 등) ①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46조의2제3항에 따라 사업 시행자가 중구에 납부해야 할 설치비용의 납부시기 및 비용은 아래의 표와 같다.

납부시기	착공일로부터 3개월 후	착공일로부터 9개월 후	착공일로부터 15개월후	착공일로부터 27개월후	착공일로부터 39개월후	준공일로부터 3개월 전	합 계
납부금액	54억원정 (10%)	31억원정 (5.7%)	85억원정 (15.7%)	50억원정 (9.3%)	50억원정 (9.3%)	270억원정 (50%)	540억원정 (100%)

- ② 설치비용의 납부 방법, 납부비용의 의사 통지 및 납부 완료 확인 등에 대하여는 “서울역북부 지구단위계획 관련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 납부 협약서” 제6조 규정을 따른다.

제7조(협약의 변경) 협약당사자는 사업계획 변경 등의 사유로 본 협약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상호합의를 통해 본 협약서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8조(분쟁의 조정 등) ① 본 협약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협약당사자 간 협의하여 처리한다.

- ② 이 협약서 해석에 이의가 있거나 협약당사자 간 견해가 서로 다를 경우에는 「국토 계획법」 제52조의2,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46조의2,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19조의3,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등 설치비용 관리·운영기준」 등 관계법령 및 조례의 관련 규정과 서울역북부 지구단위계획 결정사항에 따라 처리한다.
- ③ 본 협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협약당사자” 간의 분쟁에 대하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9조(협약의 효력 등) 이 협약은 협약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하고, 제5조에 따른 설치 비용을 사업시행자가 중구에게 납부 완료할 때까지로 한다.

제10조(준용) 본 협약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법령 및 규정 그 밖의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위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고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고 “중구”, “사업시행자”가 판인날인(직인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24년 1월 2일

중구 (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 17)

중구청장

김 길 성

(주)서울역북부역세권개발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장차로 5번길 5-17)

대표이사

황 규 현

서울역북부 지구단위계획 공공시설등 설치비용 납부 협약서

〈 서울특별시 - 중구 - (주)서울역북부역세권개발 〉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라 한다), 중구(이하 “자치구”라 한다) 및 (주)서울역북부역세권개발(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서울역북부 지구단위계획 결정사항에 포함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52조의2제2항에 따른 “공공 시설등 설치비용 납부”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19조의3제3항제2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서울역북부 지구단위계획 결정사항에 따른 공공시설등 설치비용 사용 계획에 대하여, 공공시설등 설치비용(이하 “설치비용”이라 한다) 납부액, 납부방법 및 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의 성실의 원칙) “서울시”, “자치구” 및 “사업시행자”(이하 “협약당사자”라 한다)는 본 협약을 체결하고 이행함에 상호 의사를 존중하며, 신의 성실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제반법령 및 협약내용 준수) 협약당사자는 본 협약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제반 법령과 본 협약의 내용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필요시에는 협약당사자 간 협의하여 처리한다.

제4조(공공시설등 설치기금) “서울시 및 자치구”(이하 “귀속주체”라 한다)는 사업시행자가 납부하는 설치비용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국토계획법」 제52조의2제4항 및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조례」에 따라 공공시설등 설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5조(설치비용) 서울역북부 지구단위계획 결정사항 중 ‘공공시설등의 설치에 관한 계획’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귀속주체”에 납부하여야 하는 설치비용은 다음과 같고,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구 분	설치비용	비 율	비 고
서울시	일금 2,160억원정	80.0%	
자치구	일금 540억원정	20.0%	
합 계	일금 2,700억원정	100.0%	

제6조(납부기간 및 금액 등) ①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46조의2제3항에 따라 사용승인(또는 준공검사) 신청 전까지 사업시행자가 “귀속주체”에게 분할하여 납부하는 시기 및 금액과 방법은 다음과 같으며 1개월은 30일로 한다.

1. 최초납부시기는 착공신고필증 발급일(이하 “착공일”) 기준 3개월 이내로 하며, 납부금액은 전체 설치비용의 10%로 한다.
2. 최종납부시기는 준공예정일(이하 “준공일”) 기준 3개월 이전으로 하며, 납부금액은 전체 설치비용의 50%로 한다. 단, 공사 진행상황에 따라 준공일이 변경될 경우 변경된 준공일을 기준으로 한다.
3. 그 외 설치비용은 착공일로부터 15개월 이내에 5%를 납부하여야 하며 27개월 이내에 5%, 39개월 이내에 30%를 납부하여야 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의 납부일은 해당 지급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 등 은행 휴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의 은행영업일로 한다.
5. 제6조에 따른 “기금” 미설치 등 “귀속주체”的 여건에 따라 설치비용 귀속 불가 시, 해당 설치비용은 다음 납부시기로 이월한다.

납부금액	납부시기	착공일로부터 3개월 이내	착공일로부터 15개월 이내	착공일로부터 27개월 이내	착공일로부터 39개월 이내	준공일로부터 3개월 이전
서울시	2,160억원정	216억원정	108억원정	108억원정	648억원정	1,080억원정
자치구	540억원정	54억원정	27억원정	27억원정	162억원정	270억원정
합 계	2,700억원정 (100%)	270억원정 (10%)	135억원정 (5%)	135억원정 (5%)	810억원정 (30%)	1,350억원정 (50%)

-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 제4호의 납부일 45일 전까지 “귀속주체”에 설치비용 납부 의사를 통지하여야 하며, 이를 통지 받은 “귀속주체”는 통지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납부금액과 납부받을 제6조의 “기금” 계좌를 “사업시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사업시행자”는 “귀속주체”로부터 납부금액과 계좌를 통지 받은 날로부터 제1항제4호의 납부일 전까지 납부금액을 통지 받은 계좌에 입금하고, 입금을 완료했음을 “귀속주체”에게 문서로 통보(입금 관련 증빙서류 첨부)하여야 한다.
- ④ “귀속주체”는 제3항의 문서를 통보 받은 후 납부금액을 수령하였음을 “사업시행자”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 ⑤ “사업시행자”的 귀책사유로 제1항에 따른 납부일까지 “귀속주체”에게 설치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납부일 다음날부터 실제로 납부하는 날까지 민법 제379조(법정이율)에 따른 연 5% 이자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귀속주체”가 납부지연의 불가피성과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 이자를 가산하지 않을 수 있다.

- 제7조(협약의 변경 등) ① “협약당사자”는 사업계획 변경 등의 사유로 본 협약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상호합의를 통해 본 협약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 ② “서울시” 또는 “자치구”는 각각 귀속되는 납부금액의 범위 내에서 제6조의 납부시기·금액을 “사업시행자”와 별도협약을 통해 변경할 수 있다. 단 최초와 최종납부시기 및 금액은 변경 가능 대상에서 제외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협약체결 시 “서울시” 또는 “자치구”는 협약을 변경하였음을 상호 간에 문서로 알려야 하며, 해당년도 내에 변경된 협약내용을 본 협약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8조(분쟁의 조정 등) ① 본 협약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협약당사자” 간 협의하여 처리한다.
- ② 본 협약 해석에 이의가 있거나 “협약당사자” 간 견해가 서로 다를 경우에는 서울역북부 지구단위계획 결정사항과 「국토계획법」 제52조의2, 동법 시행령 제46조의2, 「서울 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19조의3,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등 설치비용 관리·운영기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 ③ 본 협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협약당사자” 간의 분쟁에 대하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9조(협약의 효력 등) 본 협약의 효력은 “협약당사자가” 협약서에 날인한 날로부터 발생하고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설치비용을 “사업시행자”가 “귀속주체”에게 납부 완료할 때까지로 한다.

제10조(준용) 본 협약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법령, 규정 및 그 밖의 사회통념에 따라 처리한다.

위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고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협약서 3부를 작성하고 “서울시”, “자치구”, “사업시행자”가 관인날인(직인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23년 12월 14일

